

인권정보자료실
Mj1.4

제 9차 SCCS Workshop

세계화와 인권: 영주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
Globalization and Human Rights: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Resident Status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서울중국학중심 (SCCS: www.sccs.co.kr)

후원: 국제인권법학회, 재일한국화교연구회, 참여연대,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한성화교협회, 서울차이나타운개발추진위원회

Mj1.4

제 9차 SCCS Workshop

세계화와 인권: 영주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
Globalization and Human Rights: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Resident Status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서울중국학중심 (SCCS: www.sccs.co.kr)

후원: 국제인권법학회, 재일한국화교연구회, 참여연대,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한성화교협회, 서울차이나타운개발추진위원회

목 차

1. 프로그램
2. 개회사: 양필승(서울 중국학 중심 대표, 건국대학교 교수)
3. 인사말: 송두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4. Keynote Speech: 강재언(일본 花園大學 교수)
“다원화시대의 실질적인 고민들: 재일동포와 한국화교의 인권”
5. 법안 소개: 정대철(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
6. 토론
이부영(한나라당 부총재):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자
유국홍(한성화교협회장): 영원한 이방인 한국화교
Richardson, David(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 영주권 취득에 대한 견해
안영도(민변 변호사): 입법청원의 동기와 주요골자
박은경(세계 YWCA 부회장): 한국화교의 위상
이철우(성균관대 교수):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의의

부록:

1.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
2. 관련 보도자료

<프로그램>

세계화와 인권: 영주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

세계화 시대에 인권은 더 이상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합법이건 불법이건 외국인의 이주 대열이 몰려오고 있다. 오늘날 이들은 우리들의 이웃이자 동료로서 살고 있으며,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기실, 화교의 경우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서 유일한 소수 민족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 우리의 재외 동포들은 독자적인 이민사회를 형성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재일동포의 경우, 지방정부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외국인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하루 속히 확립되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주권 제도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거주 외국인들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되는 셈이다. 결국 영주권 제도는 우리의 세계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촉매로서도 작용할 것이다.

일시: 2001년 3월 28일 (수) 오후 2시 ~ 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서울중국학중심

후원: 국제인권법학회, 재일한국화교연구회, 참여연대,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한성화교협회, 서울차이나타운개발추진위원회

프 로 그 램

사회자: 양필승 (서울중국학중심 대표 / 건국대학교 교수)

1. 개회사: 사회자

2. 인사말: 송두환 (민변 회장)

3. Keynote Speech: 강재언 (日本 花園大學 교수)
다원화시대의 실질적인 고민들: 재일동포와 한국 화교의 인권

4. 발표: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

5. 토론:

이부영 (한나라당 부총재)

유국홍 (한성화교협회 회장)

Richardson, David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

안영도 (민변 소속 변호사)

박은경 (세계 YWCA 부회장)

이철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6. 질의 응답

7. 폐회사: 사회자

8. 다과회: 의원회관 로비

Globalization and Human Rights: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human rights no longer constitute a superficial issue. In Korea, an influx of immigrants, legal and illegal, occurs daily; they are now our neighbors and colleagues, not any more strangers. For such a long time, in effect, the Chinese already survived as only one ethnic minority group in Korea. In the meantime, a growing number of Koreans choose to live outside of their homeland. In several countries, they have successfully built their own community. In Japan, for instance, the ethnic Koreans came to launch a civil movement for their right to vote in municipal elections. Despite those rapid changes, however, Korean society fails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ramework in which the alien residents live a comfortable life. In particular, they want to establish their legal status in order to avoid the encroachment upon their human rights. In this context,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is an institution to improve their legal status while allow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ir nationalities on their choice. To be sure, it is also to enhance our efforts at globalization.

Time : 2:00 p.m. ~ 4:00 p.m., Wednesday, March 28, 2001

Place : Conference Room, National Assembly Bldg.

Host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BYUN)

Organizer : Seoul Center For Chinese Studies (SCCS)

Sponsors : The Korean Society of Human Rights Law

The Study Group of the Ethnic Chinese in Korea, Japa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he Korea Federation of Common Good Movement for New Society

Chinese Resident's Association, Seoul, Korea

Seoul Chinatown Development Committee

Program

- Chair : **Yang, Phil-Seung**, Director, Seoul Center For Chinese Studies
Prof., Konkuk Univ.
- Opening Remarks : Chair
- Greeting Address : **Song, Doo-Hwan**, President,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Keynote Speech : **Kang, Jae-Eun**, Visiting Prof., Hanazono Univ., Japan
"Some Practical Issues in the Era of Pluralism: The Human Rights of the Ethnic Korean in Japan and the Ethnic Chinese in Korea. "
- Presentation : **Chung, Dai-Chul**,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of Supreme Council of the Millennium Democratic Party
"The Intents and Contents of 'The Special Law on the Permanent Resident Status of Long-term Foreign Residents. ' "
- Discussions :
- **Lee, Bu-You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puty President of the Grand National Party
 - **Liu, Kuo-Hsing**,
President, Chinese Resident's Association, Seoul
 - **Richardson, David**,
Governor,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Ahn, Young-Do**,
Member,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Park, Eun-Kyoung**,
Vice President, World YWCA
 - **Lee, Chul-Woo**,
Prof., SungKyunKwan Univ.
- Question & Answer :
- Closing Remarks : Chair
- Tea Time : Lobby on National Assembly Bldg.

개 회 사

양 필 승
서울중국학중심 대표 / 건국대학교 교수

세계화 시대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미국과 달리 아직 영주권 제도가 없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은 화교를 비롯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획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미 98년 방일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해 참정권 부여의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은 이미 영주권 제도를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정치적 권리인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임에 반해, 우리는 아예 영주권은 물론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약 2만 명에 달하는 한국 화교는 비록 수대에 걸쳐 우리 땅에서 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는 2년마다, 최근에는 5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세계화는 담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인권에 관한 한 재일 동포에게는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도 재한 화교에게는 영주권도 부여하지 않은 이중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다.

이미 민변을 위시한 본 토론회의 참여 단체들은 작년 7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세계화와 인권: 화교의 법적 지위 향상"이란 주제의 세미나로 한국 화교의 법적 지위 문제를 우리 사회에 부각시켰다. 당시 주요 언론 기관은 토론회를 보도하면서, 차제에 영주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마침내 작년 말 주요 시민 단체들과 함께 영주권 제도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성안된 청원안을 다시 최근 민주당의 정대철 최고위원, 한나라당의 이부영 부총재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바꾸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양당이 모두 당론으로 확정지은 이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영주권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

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두 의원은 밝힌 바 있다.

오늘의 모임이 한국화교 뿐만 아니라, 해당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인권 향상을 위한 우리의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개선시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시혜적 조치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한국사회 스스로를 위한 것으로, 한국사회가 "내부의 세계화"와 함께 "내면의 세계화"를 당면 과제로 삼았을 때,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로서 본 토론회의 의의가 있다고 믿는다.

인 사 말

송 두 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엿그제부터 꽃샘추위로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주최측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꽃샘추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실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시사철 추운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남들만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고있다는 느낌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민변은 이런 분들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해 왔습시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인권문제가 널려있습니다. 저희 민변이 종래 관심을 가졌던 것은 주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반독재 투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옹호,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른바 억압받는, 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의 권리 문제에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억압받는 소수자의 권리라고 하면 여러 분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민변은 몇 분 회원들의 발의로 한국 내에서 소수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문제, 특히 한국 화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의 화교들은 분명한 영주의사를 가지고 수대에 걸쳐 우리와 함께한 이웃이지 일시 체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정기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영주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재산권 등의 행사에도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등, 그들의 법적 지위는 여행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화교들은 점차 한국을 떠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배타적, 폐쇄적인 나라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 주민자치에 대한 참정권의 부여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등 외국에 대한 우리 주장의 설득력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외국인 법적 지위의 보호,

보장은 꼭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변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화교 문제, 특히 화교의 법적 지위 향상 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아왔고, 작년 초반부터는 서울중국학중심 연구위원과 협력하여 화교의 현황 파악 및 영주권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작성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우리 민변과 한성화교협회가 공동으로 “세계화와 인권: 화교의 법적 지위 향상”이란 주제 하에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여부가 공개적인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당시 많은 언론 기관이 보도는 물론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하에 작년 연말에는 우리 민변과 여러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입법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다행스럽게도 정치권에서 항상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정대철 의원과 이부영 의원께서 이 사안의 중요성에 공감을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의원입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희 민변은 드디어 장기거주 외국인의 영주권 제도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두분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재일 지식인 사회의 지도자이시면서 국내외적으로 존경받는 한국사의 대가이신 강재언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세계화와 인권문제를 보다 폭 넓은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멀리에서 이 토론회의 초청에 응해주신 강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토론회가 우리 사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한 차원 높이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쁘신 중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이 토론회의 주관을 맡아 실무적 준비를 해주신 서울중국학중심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원화시대의 실질적인 고민들: 재일동포와 한국화교의 인권

강재언
일본 花園大學 교수

한국의 화교문제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한국의 화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은 1975년 일본에서 재일문화인 김남수씨, 박정식씨와 함께 편집위원으로 계간지 <삼천리>를 50권까지 발간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일년에 한번씩 재일 동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조직을 형성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중 재직하고 있던 학교로 “당신이 일본에서 일본 정부의 차별제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당신은 한국정부가 한국 화교들을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는 내용의 항의전화, 협박편지 등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인들이 만약 우리를 센징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화를 내면서 한국의 지식인들도 중국인들을 보고 때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똥물은 개가 겨물은 개를 나무란다는 식이라는 것이지요. 먼저 자신의 자세를 똑바로 하지 않고 남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화교에 대한 처우 문제로 인해 우리의 주장이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화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화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서 자료를 구하려고 노력하던 중 1999년 영남일보가 창간 50주년 기념으로 일본에서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에 관해 취재를 의뢰했고, 당시 영남일보가 특집으로 한국 화교를 다룬 기사의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에서의 우리 동포에 대해 차별과 멸시를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의 명분이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즉 “이는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갈등으로, 일본에서 1억 2천만 가운데 우리 동포 20만도 소수집단의 문제이며, 한국에서의 4천 5백만 가운데 화교 2만명 또한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문제이다. 이것은 냉전체제가 분해된 이후의 생긴 보편적인 문제로서, 때론 전쟁도 발생하고 있다. 코소보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문제이다. 미국에서의 흑인 문제 역시 여기서 출발한다. 여러가지 종교적 문제가 결부되어 나타나곤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갈등으로, 이것은 세계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이에 덧붙여 “영남일보의 화교에 대한 취재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화교의 역사가 1882년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이제 그 2세 3세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에 대해 차별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 역으로 만약에 일본에서 우리 동포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그와 같은 차별적인 취급을 하면 당장 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민족차별을 묵과하는 국가의 민주주의는 가짜다” 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여러 언론이나 학자들의 민족권리에 대한 주장은 매우 국수적입니다. 일본 국민 내부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하나, 주변의 비일본에 대한 민족의 차별에 대해서는 묵과하거나 동참하는 경향이 강하며, 저는 이런 민주주의는 가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한마디로 단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남일보가 화교에 대해 취재한 내용 중에 저의 이런 생각과 일치하는 양필승 교수의 코멘트가 들어있어 상당히 다행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화교에 대한 차별적인 문제가 우리 손, 즉 한국 사람에 의해 해결되지 않고 일본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다루어지고 문제점으로 제시된다면 민족의 수치입니다. 화교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단순히 화교를 돕는 차원이 아닌 우리 민족의 위신과 체면 문제입니다. 저는 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양교수님과 동지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인권규약에 비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장만 찍어놓고 나는 모른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실은 재일동포 영주권 문제는 한일조약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이 이후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었던바, 이 차별의 근거는 국적 조항입니다. 일본 법에 ‘우리 국민은----’라고 시작하는데 ‘우리 국민’에는 한국인,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당신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식이지요. 가령 우리 생명의 문제와 결부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이 아니면 가입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도 노후보장 문제인데 ‘우리 국민’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국민’과 결부된 문제입니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1978년 일본은 선진국의 체면이 있어서 국제인권규약에 서명을 했고, 1979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국제인권 규약은 추상적인 세계 인권 선언과 달라서 규정을 하면 국내법이 규제를 받는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인권적 차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만일 국제기관에 고발이 되면 국제적인 위신의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국제인권규약의 기본원칙은 사회보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민주적인 평등의

원칙입니다.

일본정부가 국제인권문제의 규약을 비준하는데 13년이라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외무성과 법무성 경찰청의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외무성의 입장은 국제무대에서 항상 이 문제가 논의되면서 경제대국 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삼류라는 노골적인 비난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본의 체면과 위신을 위해 경제적 동물이라는 비난을 해소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성은 일본의 모든 법률은 한국인을 차별하기 위한 법률(즉 우리 국민이라는 관점)이므로 비준하기 전에 먼저 국내법의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하고, 이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칙적인 행위들이 발생했고, 우리는 이런 변칙에 대항하여 우리가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해방 후 제일 한국인의 역사는 차별과 멸시를 반대하고 철폐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지금은 참정권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만 80년대는 지문날인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지문날인은 범죄자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16살 때부터 지문을 찍습니다. 바로 범죄 예비인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철폐되어야만 했고, 이를 위해 수 많은 노력을 다한 결과 이제는 시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화교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영주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일동포들은 영주권이 없던 시절에 대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이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용자는 물론이고 월부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주권은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현재 일본의 외국인관리법은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입니다. 한국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법은 이보다 나은 훌륭한 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인권대국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단순히 화교 자본을 끌어 들인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과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정 대 철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1. 취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장기간의 거주를 통하여 생활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과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고, 주관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생활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장기거주 외국인이 다수 있다.

99년 말 출입국관리소 통계에 의하면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외국인은 총 22,719명이고, 이중 화교가 22,00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은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시체류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지구촌이 하나로 결합하여 가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처우는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을 직접 국제법상의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인권법적인 차원에서도 시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지위 개선과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입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작년 11월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안」이 제출되어, 현재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그러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안정화하는 것이 지방선거권 부여보다 선결과제라 생각되어 저와 한나

라당 이부영 부총재 등이 중심이 되어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의 공청회를 거쳐 4월에 제출하게 된다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이전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들을 개선하면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서울이 외국인이 살기에 열악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의 재외동포들이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않게 하기 위한 배려도 있다.

2. 법안 주요 내용

1) 제 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장기체류 외국인 등의 영주권 취득에 관한 사항과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제 2조에서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장기체류외국인”이라 함은 出入國管理法상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으로서 出入國管理法 제31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자를 말함..

3) 제 3조에서는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안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4) 제 5조 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영주권을 신청한 장기체류외국인으로서 영주권취득신청을 한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음.

5) 제 7조 1항에서는 영주권 취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자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거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영주권자이고, 자신의 자산이나 기술에 의하거나 생계

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속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6) 제 7조 2항에서는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民法에 의하여 미성년인은 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신청을 할 때 함께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영주권을 부여한 때에 함께 영주권을 취득함.

7) 제 12조 2항에서는 영주권 취득자의 의무사항과 영주권 박탈을 규정하고 있다.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유지하여야 하며, 1년 이상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영주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음.

8)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出入國管理法 제 46조의 적용을 배제함. 다만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3조).

9) 제 14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 있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주권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제 16조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주권자는 外國人土地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음.

11) 제 18조에서는 영주권자는 國民健康保險法 및 國民年金法에 따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제 19조에서는 영주권자는 국내의 각급 학교에 취학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자!

이 부 영
한나라당 부총재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이부영의원입니다.

먼저 “영주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대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현재 한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체류외국인들은 약 2만 3천여 명 정도이며, 그중 95%이상이 화교입니다.

이들은 몇대 째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또 한국사회 속으로의 통합을 원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냉대와 사회적 차별 속에서 이방인들로 맴돌고 있습니다.

국내 화교 이민사는 올해로 약 110년을 헤아리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차별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교들은 영주권, 취직, 교육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적 장벽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공식자료에서조차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시절의 화교정책을 “1·3공화국 당시의 억압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취득제한, 거주자격 심사강화, 세무조사 등 차별정책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지금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화교를 비롯한 장기체류 외국인들은 거주, 직장생활, 금융거래 등에서 많은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편으로는 세계화, 문화선진국, 상생의 철학을 부르짖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종적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일본정부에 대해 재일동포에게 지역참정권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의 장기체류 화교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존권이라도 보장하고 있는지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로서 살고 있으며 더 이상 이방인으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화교의 경우 이미 오랜 세월동안 한국에서 유일한 소수민족으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지위개선과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한국사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이방인 한국화교

劉國興
한성화교협회 회장

우리 화교는 이미 수대를 거쳐 이 땅에서 한국 사회의 일부로서 살아왔습니다. 일찍이 일본에 맞서서는 한국인 독립 투사들과 함께 반식민지 투쟁을 전개했으며,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 총을 들고 전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사회가 화교를 비롯한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해 심히 차별하자 많은 수가 이민의 대열에 섰지만, 아직도 우리 화교들은 타국에서도 한국의 노래와 음식을 생활의 일부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화교는 중국인으로서 정체성도 유지하며 살지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까닭에 일제는 의도적으로 한국인들과 화교 사이의 이간 정책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일제 식민지 잔재가 사라졌지만, 한국인의 화교에 대한 차별의식은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커다란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화교들을 보는 한국 사람들의 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도시에서 차이나타운을 새로 또는 다시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우리 서울의 화교들도 몇몇 뜻 있는 한국인들과 함께 차이나타운을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을 위시한 많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우리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임이야말로, 그 같은 노력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화교의 입장에서는 차이나타운과 같은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중요하고, 참정권 부여와 같은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노력에도 매우 감사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영주권과 같은 우리의 기본 인권을 향상시켜 주는 조치가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2년에 한번씩, 최근에는 5년에 한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화교 가정의 달력에는 가족들의 비자 갱신 날자가 빨간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는 날이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우

리는 다시 입국과 거주를 위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우리는 항상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에서 우리의 지위는 장기 방문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화교는 이미 삼대, 사대를 거쳐 한국에서 살아 왔습니다. 대다수 한국인처럼 우리도 김치 없이는 식사하기 힘듭니다. 외국에 가서도 한국인 이민 단체와 같이 어울려 생활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인과 결혼하는 사례가 더욱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언어는 중국어도 한국어도 모두 섞인 일종의 짬뽕과 같은 언어가 된 지 이미 오래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으로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은행대출도 못 받고, 핸드폰도 우리 이름으로 갖지 못하며, 그 흔한 이메일 주소도 무료로 지니지 못합니다. 더욱이 몇 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세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세금을 다 지불해 왔습니다. 우리들의 화교학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의단체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아이들의 학력은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완전히 한국의 법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초법적인 특혜를 누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국의 법이나 사회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화교는 이 나라를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일본으로, 대만으로 떠났지만, 여전히 한화, 즉 한국화교로서 살아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재미한 화협회가 조직되는 등, 우리는 타국에서도 한화로서 정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사람들처럼, 많은 화교들이 말년을 한국에서 보내길 원할 정도입니다.

이제 영주권 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사회에서도 우리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길이 마련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감격을 맛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한국에 사는 중국인으로서의 독특한 입장에서 공헌할 바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한중교류를 한 차원 승화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세계화를 위해, 살아 있는 촉매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화교 사회를 대표하여, 영주권 제도의 도입에 온갖 열성을 아끼시지 않은 몇몇 한국인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양필승 교수 등 서울차이나타운 추진위원회의 인사들, 홍성우 변호사를 위시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신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영주권 취득에 대한 견해

David Richardson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

먼저 이 자리를 준비하시고 주최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저에게 주한 외국인 사업자로써 이 자리에 참석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론되는 이슈는 한국을 자신의 고국이라고 여기고 있는 화교와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비즈니스 맨으로서의 저는 이것이 한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안전과 합법적 장기 체류 등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좋은 비즈니스 환경과 인재로 이루어져 잠재성과 기회가 풍만한 나라입니다. 전세계의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가 정확한 정보만큼의 큰 영향력을 지닐 만큼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미디어에서는 가끔 한국을 적합하지 않게 묘사하며 개인의 경험들은 자주 일반화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대한 확신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온 사람들의 일부는 한국인이 아닌 15여년간을 한국에서 동거동락 해 온 바로 나와 같은 외국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묻고 싶습니다. “외국인이란 바로 누구인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인가? 나는 왜 이 나라를 옹호하고 있는가?”

성공한 외국 비즈니스 맨의 한명으로서 나는 이 나라,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어서 성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한 외국 회사들과 외국 매니저들은 더 열심히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내가 의장으로 있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현재 1000여 개의 주한 외국인회사와 2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픈 외국 회사에게 많은 정보 및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및 고용 기회 창출, 기술 이전, 관리 등에 힘써,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사업 확장 뿐 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는 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옹호하고 이를 뒷받침 하고 있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멤버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현 미국상공회의소의 대표인 제프리 존스는 매년 Doorknock visit이라는 취지 하에 현재 미국의 부시정부 및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여러 방면으로 한국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을 위해 이렇게 힘을 쏟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임원의 상당 수가 한국에 뿌리를 둔 Korean American이기 때문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국을 자신과 조상의 나라로 여기고 아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 외국인 거주자들은 한국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건설적인 해석을 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일에 전념 하고 있습니다. 장기 거주를 하고 있는 의장들은 오히려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며 한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라도 한국에서 그들 자신이 원하는 만큼 계속 머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어 단순히 손님과 같은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실력있는 많은 이들이 한국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머물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자신들은 타인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한국에 왔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갖고 한국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에게 법적 권리를 확장하는 것은 한국 내에서 그들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세계 지구촌 시대에 한국을 알리고 옹호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Note: 데이빗 리차드슨씨는 현재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의장이며 1985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세계적 마케팅 리서치 회사인 테일러 벨슨 소프레이스 한국지사 사장으로 1988부터 일하고 있다.

입법청원의 동기와 주요골자

안 영 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I. 입법청원의 동기

1. 2000년 7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한성화교협회가 공동으로 “세계화와 인권: 화교의 법적 지위 향상”의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화교의 거주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2. 이 같은 공감대의 형성은 이미 화교를 비롯한 정주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에서도 보여 주듯이 우리 사회가 그간의 외국인에 대한 폐쇄성에서 벗어나 전향적 자세를 가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미나의 결과를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관심있게 다룬바 있다.

3. 따라서 한국화교의 거주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F2비자 대신 전반적인 영주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화교만을 위한 특별 영주권제도 대신 전반적인 영주권제도의 시행은 비록 화교가 한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또 다른 차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화교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다른 외국인이 있다면 이들 역시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4. 기실 한국화교를 포함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개선시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시혜적 조치가 아니며, 한국사회 스스로를 위한 것으로, 한국사회가 “내부의 세계화”와 함께 “내면의 세계화”를 당면 과제로 삼았을 때 반드시 선결해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5. 민변의 입법청원은 화교와 법률적 지위가 유사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

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의 내용을 참조하여 안을 작성하였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그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 첫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 둘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에 정한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1조는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출입국과 “대한민국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입법취지는 재외동포의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향상에 있는 바,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 등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법적 지위에 참고가 되는 법률이라고 판단되었다.

6. 민변의 입법청원은 헌법상 기본권 조장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이다”고 판시하여 왔다.

(헌재 1994. 12. 29.자 93헌마120호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헌재 1998. 3. 26.자 96헌마34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청원 등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의 위헌확인사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는 화교 등 장기체류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된다.

7. 따라서 우리 민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의 취지 및 여론의 공감대에 힘입어 화교를 포함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폐쇄성과 이중성을 극복하고 세계화 시대의 인권 향상을 위한 의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청원하게 되었다.

II. 주요 골자

1. 이 법은 장기체류 외국인 등의 영주권 취득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참조 : 재외국민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1조

2. 이 법에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라 함은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그의 배우자 및 출생 자녀와 국민의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함

참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체류자격, F-2비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8조의 2(체류자격별 체류기한의 상한)

3.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요건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거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영주권자 일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술에 의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속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안에서의 계속 거주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출입국 관리법 제 46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함

4. 법무부장관은 영주권을 신청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음

5. 영주권자는 대한민국내의 주거를 영구히 유지하여야 하며, 1년 이상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영주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음

6.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 46조의 적용을 배제함. 다만 형법 제 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 있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참조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9조(주민등록증과의관계)

8.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의료보험 관계법령, 국민연금 관계법령에 따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음

참조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

9.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취학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

10.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 다만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의회제도의 연혁을 보면 “대표없이 과세 없다”라는 말이 표현하듯이 조세 승인권이 의회제도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되어왔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지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당연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어야 하나 병역의무가 없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III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영주권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미국 시민이 아닌 자를 뜻한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주거를 영구히 유지하여야 하며 1년 이상 미국을 떠나있는 경우에는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우로는 가족관련영주권, 고용관계영주권, 인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추천영주권, 망명자의 영주권, 사면에 의한 영주권 등이 있다

2. 독일의 장기체류외국인

가.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

독일에서 장기체류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차적으로 부여하는 장기체류허가이다
한번 무기한형의 체류허가를 얻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다시는 기한형 체류허가로 소급되지 않는다

나. 체류특권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법 제27조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으로서 독일에서 장기 체류함에 있어 보장받을 수 있는 2차적 이고 최고의 특권이다. 그 특징은 독일에서의 체류에 있어 공간적·기간적으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추방에 있어서도 엄격한 보호를 받는다.

3. 일본의 경우

가. 체류자격

장기 거주 외국인을 특별영주자 (재일교포, 재일화교 등의 경우와 같이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영주자), 영주자, 정주자로 구분

나. 체류조건

- 특별영주자와 영주자는 무기한
- 정주자의 경우는 법무대신이 정한 기간 (3년, 1년, 6개월)

4. 대만의 경우

외국인 거류이민법 소정의 永住居留證 신청대상자

- 7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 거주한 외국인
- 그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그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15년 이상 거주하고 그중 8년을 매년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한국화교의 위상

박은경

세계 YWCA 부회장 / 환경과 문화 연구소 소장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의 이동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동의 역사는 한 지역의 원주민과 외래 이동인 간의 사회, 정치, 경제적 관계가 주를 이룬다. 이주민 사회는 주재국의 사회 구조, 정책, 종족 집단간의 상호 작용, 이동 시기 등에 의하여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주민 집단은 주재국의 각종 법--이민법, 국적법, 토지법, 상행위 관련법, 고용법 등--과 주재국 사회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주지역의 사회 규범과 경제, 사회 문화적 법칙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타지역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을 종족(ethnic group)이라고 한다. 종족성(ethnicity) 연구에서는 이들 이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과거 사회에서의 종족성을 고수하는 여부가 주재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종족성의 자발적이고 상황적이라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고(Glazer & Moynihan 1975; Nagata 1974; Patterson 1975), 이러한 주장과 달리 중국인은 어디를 가나 그 주재국의 상황에 관계없이 중국 문화를 고수하는 중국인이라는 주장으로 종족성을 '귀속성'으로 설명하는, 즉 중국인의 비 동화성을 강조한 연구들로 구분된다(Mallory 1956).

한국화교의 경우,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 95%가 산둥성 출신이라는 특성이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의식을 고수하게 작용하였다. 잦은 고향방문과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화교사회가 귀속적으로 동일 고향 지역민들의 교류로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화교사회가 한국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격리된 사회로 발전된 경향이 있다. 동시에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비 동화정책--1950년 봄 창고 봉쇄령, 외환규제, 1950년대 이후 외국인의 무력활동 금지법, 1961년 9월의 외국인 토지소유금지령, 자유방임적 화교교육등--은 화교들을 한국사회에 살아 남기 힘들게 하였다. 이는 바로 한국화교사회가 그들의 중국이라는 지위와 문화를 귀속적이고 상황적인 면에서, 즉 이중으로 강화시켜서 화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한국화교를 일반외국인과 동일시할 수 없는 까닭을 그들의 역

사속에서 읽을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속에서 인접국을 통한 인적, 물질적 교류가 있어 왔으나, 국경지역이 아닌 한국의 중심부로 이동이 시작된 시기는 바로 1882년 임오군란이후이다. 한국내의 고종과 민비 간의 알력과 거기에 편승한 청국과 일본국의 내정간섭으로 엮어진 와중에 한성에 들어 온 청군40여명과 그들을 따라 온 군역 상인들 중 일부가 한국에 눌러 앉으면서 시작된 화교 사회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화교사회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화교들은 한국 땅에서 태어났다. 이들 3세와 4세인 화교들은 한국말을 한국인만큼 잘 구사하고, 춘장보다는 고추장과 된장을 더 좋아하고, 김치없이 밥을 먹지 못하고, 한국노래를 읊조리고, 한국풍습에 젖어 있고, 그들 일부는 한국어머니를 가진 한국 문화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제 김포공항에 도착한 외국인과 동일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제약받으면서 한국 땅에 살고 왔다.

10만여 명(필자의 연구로는 8만여 명의 기록까지 찾을 수 있었다)에 이른다고 전해 오는 화교사회가 이제 2만 명이 채 못되고 있고, 현재 그 인구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고 화교협회는 말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까지 전국에 걸쳐서 조직되어 있던 50여 개의 화교협회와 같은 수의 화교학교를 통한 조직적인 화교사회는 붕괴되었고, 1970년 중반부터 시작된 화교들의 대만과, 미주로의 이민행렬이 이어져서 한국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문 단일민족국가이다. 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민족구성은 단 5%에 불과하다고 한다(Anthony Smith, 1981). 이러한 종족적 구성과 함께, 극동 아시아의 끝에 위치해 있고, 또한 분단국가라는 지난 50여 년 간의 역사적 상황은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고도(孤島)'화 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절단은 그대로 한국인의 사고를 단일민족에서 유발된 획일적 사고를 더욱 고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폐쇄적 사고는 국경이 열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을 양산하고 있다. 절대 경쟁이 한국 내가 아닌 전 세계로 그 범주가 넓어진 이 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짊어준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신들이 사는 공간에서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세계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즉 한 국가는 한 민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허구를 안고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이성을 조금이라

도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은 한국 내에 거주하는 화교는 물론 외국인들을 우리 이웃으로 맞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서울이 외국인들이 살기에 가장 열악한 도시라는 누명을 벗고 우리 젊은이들을 세계인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 체류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이 한반도에 다양한 국적인들이 모여 살도록 허용하는 일은 바로 아래와 같은 차원에서 권장해야 한다.

- 1) 한국사회에 결여된 다양성을 보완할 수 있는 차원
- 2) 가족, 지역이기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한 차원
- 3)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젊은이들이 외국과 세계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
- 4)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세계로 퍼져나간 우리 동포들이 각 주재국에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
- 5)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국적지에 전달할 수 있는 문화 대사들의 확보차원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의의

이 철 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사회학)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 차원에서는 화교를 비롯해 대한민국에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생활현실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그간 경험해온 불편과 불안정을 제거할 것이 기대된다. 추상적 차원에서는 국내에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제고하고 그들을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함으로써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다문화화(multiculturalisation)에 기여한다.

한국에는 약 23,000명의 거주자격(F2) 소지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절대다수인 22,000여명은 대한민국과 역사를 함께 해온 재한화교이다.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밀접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화교인구는 처음부터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작은 화교인구조차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그러한 감소는 냉전으로 인한 대중무역의 봉쇄와 같은, 한국인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법에 의한 제도적 차별과 한국사회의 무관심 및 냉대에 크게 기인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에 있어 화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칠지 모른다. 그보다는 법과 정책이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 일반의 배타성과 무관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가운데 편의주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 옳다. 1997년 외국인토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화교는 토지소유의 금지 또는 일정한 상한선의 설정으로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았으며, 아직도 경제의 많은 영역에 남아 있는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연구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화교교육을 무자비하게 규제한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와 달리 화교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취해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러한 “관대함”은 한국사회와의 의사소통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여건과 제도를 결여한 까닭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배제와 방치의 한 반

면에 불과하거나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1998년까지 화교교육기관은 교육법상의 학교법주로부터 배제되었으며, 화교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학연이 중시되는 한국사회에서 고립되었다.

한국사회로부터의 “배제”에도 불구하고 재한화교의 정체성은 철저히 한국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들이 실항민이 된 것도 한반도의 분단에 기인한다. 그들의 대만국적과 반공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의 소산이었다. 또 95%가 산동 출신인 그들의 배경은 다른 외국에 분포된 화교/화인과도 구별되는 독특한 정체성의 원천이 되었다. 오늘 함께 토론하는 박은경 박사의 연구는 재한화교가 대만으로 이주하더라도 “자국내의 소수자”로 남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재한화교는 “영원한 국외자”로서의 지위를 끊임없이 각인받아야 했다. 그들은 과거에는 3년, 1999년 이후에는 5년마다 자신들의 체류자격을 갱신하는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국적부여에 있어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도입한 97년 국적법 개정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한국인 모(母)의 출생자녀들도 포함된다.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엄연히 존재하는 소수자로서의 화교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들을 다소 장기의 “체류자” 정도로 취급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체제를 개혁하고, 그들에게 주기적으로 국외자로서의 낙인을 부여하는 부당한 법적 의식(儀式)을 종식시키게 될 것이다. 한편 동 법률에 의해 가장 혜택을 받게 되는 외국인은 화교가 되겠지만 국경을 넘는 이주가 빈번해지는 오늘의 상황에서 향후 많은 다른 외국인들도 혜택을 받아 한국사회에 정착할 것이다. 특히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생활터전을 형성하는 외국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세계화와 발맞추어 진행되는 시민권(citizenship)의 확대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 가 될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민권은 국적의 국내법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왔으며, 아직도 법적으로는 그러한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세계화의 추세는 이러한 전통적인 시민권 개념에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이주의 확대와 함께 그간 국민에게만 부여되어온 권리 중 다수 또는 일부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시민권은 더

이상 공법적 권리의 총체적이고 불가분의 패키지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화 가능한 다수의 권리들의 집합으로 그 뜻이 변경되어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민과 외국인의 이분법적 구분에 터잡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권리 배분은 통용되지 않는다. 국민과 외국인은 같은 권리의 스펙트럼 위에 어딘가에 위치하는 상대적 범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영주권자에게 금융거래와 사회보장, 교육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연장함으로써 그들을 시장과 시민사회에서 우리의 일부로 만든다. 그것은 외국인의 포용을 통한 “다문화적 시민사회”의 형성의 초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외국인을 한국사회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정치적 의사형성에도 참여시키는 개방된 체제로의 이행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정치개혁특위에 회부되어 있는 <장기거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별법안>이 주목된다. 이는 5년 이상의 장기거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장기거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별법>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한국사회는 글로벌 시민권의 이상에 한발짝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화교 등 장기거주외국인의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안정화하는 것이 지방선거권 부여에 앞선 과제라는 점, 그리고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거주자격(F2)에 더하여 강력한 거주자격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거주자격” 소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거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별법>에 선행하여 처리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어쨌든 두 입법이 큰 시차를 두지 않고 추진되고 있음은 다행이며 국회가 두 입법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논의할 것을 기대해 본다.

부록: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에 관한 사항과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장기체류외국인”이라 함은 出入國管理法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으로서 出入國管理法 제31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자를 말한다.

제3조(상호주의)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안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영주권의 부여 등) ①법무부장관은 장기체류외국인으로서 영주권취득신청을 한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영주권자는 出入國管理法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장기체류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영주권 취득의 요건) ①영주권을 취득하고자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民法에 의하여 성년이거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영주권자일 것
2. 자신의 자산이나 기술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속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4. 出入國管理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아닐 것

②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民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권신청을 할 때 함께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영주권을 부여한 때에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8조(영주권의 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장기체류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주권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심사기준 기타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영주권등록증 및 등록원부작성 등) ①법무부장관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영주권등록증을 체류지의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을 경유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체류지의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개인별·세대별 영주권등록원부 및 세대별 영주권등록색인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권등록원부에는 영주권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주소·영주권자의 여권번호·여권발급일자 및 여권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영주권등록증의 발급절차·발급수수료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주권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영주권등록증의 재발급) 영주권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그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그 등록증을 멸실·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영주권의 소멸과 등록증의 반납) ①영주권은 영주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한다.

1.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 의사가 없이 영구 출국한 경우
2. 영주권자의 사망
3. 영주권자의 영주권포기

②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유지하여야 하며, 1년 이상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영주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

③영주권이 소멸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주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강제퇴거의 배제 등)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出入國管理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刑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주민등록증등과의 관계) ①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주권등록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영주권자의 체류지변경에 관하여는 出入國管理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5조(출입국) 영주권자는 출입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16조(부동산 거래 등) 영주권자는 外國人土地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外國人土地法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금융거래 등) ①영주권자는 예금, 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영주권자는 金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어음法과 手票法의 적용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8조(의료보험, 국민연금) ①영주권자는 國民健康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영주권자는 國民年金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교육) 영주권자는 국내의 각급 학교에 취학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제20조(납세의 의무)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영주권자가 1998년 6월 25일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해서는 不動產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

附录

法律案 第 号

关于长期滞留外国人申请永住权及其法律地位的法案

第1条(目的)

这一法案的目的在于规定关于长期滞留外国人申请永住权的有关事项和关于永住权者的法律地位等事项。

第2条(定义)

在这一法案中‘长期滞留外国人’是指，作为根据出入国管理法的规定拥有滞留资格的外国人(包括无国籍者)根据出入国管理法第三十一条或第三十八条规定登记注册之日起在大韩民国境内滞留5年以上的外国人居住者。

第3条(相互主义)

法务部长官根据总统令的规定对在自国内禁止或限制大韩民国国民取得永住权的国家的国民禁止或限制其在大韩民国国内取得永住权。

第4条(政府的责任)

政府应对在大韩民国取得永住权的外国人不在大韩民国受到不公平的限制或待遇而给予必要的支援。

第5条(永住权的赋予等)

- 1 法务部长官可以对申请永住权的长期滞留外国人赋予永住权。
- 2 永住权者可以不受约出入国管理法第十条及第十七条第一项的规定，任意滞留大韩民国境内而不受滞留期限的限制。
- 3 如果申请永住权的外国人具有有碍于大韩民国的安全保障和维持秩序、公共福利、外交关系、以及其他有关大韩民国利益的可能性，可以对其不予以永住权。

第6条(和有关机构的协议)

法务部长官在赋予长期滞留外国人永住权时，要根据总统令的规定事先和外交通商部长官进行协议。

第7条(取得永住权的有关重要事项)

- 1 申请永住权的长期滞留外国人必须具备以下条件。
 - 1) 根据大韩民国民法，本人必须应该是成人或者其父或母为大韩民国国民或是永住权者
 - 2) 可以凭借自己的财产或技术维持生活，或者可以依靠家人维持生活者
 - 3) 应该具备在大韩民国生活所必要的基本素养，如国语能力及对大韩民国风俗的理解等
 - 4) 不应该是根据出入国管理法第四十六条被强制驱逐出境的对象
- 2 作为外国人的子女，根据大韩民国民法属于未成年人时，在其父或母在根据第一项的规定申请永住权的时候可以同时申请永住权，而且其父或母取得永住权时可以同时获得永住权。
- 3 对大韩民国的政治、经济、社会、文化的发展做出特别贡献者，可以根据总统令取得永住权，而不受约本法案第一条的规定

第8条(申请永住权)

- 1 作为具备第五条规定的长期滞留外国人，欲要申请大韩民国永住权时可以经由出入国管理事务所长或出入国管理事务所所长，向法务部长官提交永住权申请书。
- 2 总统令规定关于永住权申请书的登记事项、附加证件、审议标准和其他申请程序等必要事项。

第9条(永住权登记证及填写登记原簿等)

- 1 法务部长官在赋予永住权时要把填写有关事项的永住权登记证经由当事人所滞留的市、郡或自治区的各级领导交付于申请永住权的外国人。
- 2 滞留地的市、郡或自治区的各级领导要对永住权者制作·备置个人、世代永住登记证原簿及各代永住权登记表。
- 3 根据第二项的规定，永住权登记证原簿上必须记载永住权番号、性别、出生年月日、国籍、地址、永住权者的护照番号、护照签发日期及护照有效期限。
- 4 总统令规定关于永住权登记证的签发程序、签发手续费及办公处理的必要事项。

第10条(登记事项的变更申报)

永住权者在第九条所规定的登记事项中如发生变更时，当事人必须在变更之日起第14天以内向市、郡或自治区的各级领导申报。

第11条(永住权登记证的再签发)

外国人取得永住权登记证之后如果因为丢失或损坏而要重新取证时，要根据总统令事先向市、郡或自治区的各级领导申报，然后再重新取得登记证。

第12条(取消永住权和交还登记证)

1 永住权者符合下列情况之一时，永住权将被取消。

- 1 永住权者无再回大韩民国的意向而永远出国
- 2 永住权者死亡
- 3 永住权者放弃永住权

2 永住权者必须在大韩民国保留住所或地址，对于离开大韩民国1年以上者，法务部长官可以视其为放弃永住权而剥夺永住权。

3 永住权被取消之后根据总统令必须交还永住权登记证。

第13条(强制驱逐等)

永住权者不受约出入国管理法第四十六条，可是永住权者犯有刑法第二篇第一章所规定的内乱之罪或者第二章所规定的外患之罪时例外。

第14条(和居民登记证的关系)

1 在法令上规定的各种手续和交易关系上，需要出示居民登记证或外国人登记证时可以用永住权登记证代替。

2 关于永住权者的滞留地变更要遵守出入国管理法第三十六条。

第15条(出入国)

永住权者在出入国时和大韩民国国民享有同等的待遇。

第16条(不动产交易等)

永住权者除在外国人土地法第四条第二项第一号所规定的情况之外，在不动产的取得、保有、利用、处理等事情上和大韩民国国民享有同等的权力。只是必须根据外国人土地法第四条第一项，第五条及第六条的规定向有关部门进行申报。

第17条(金融交易等)

1 永住权者在存款、加入定期存款、利率、存款和取款等利用国内金融机构时和外汇交易法上的大韩民国国民居住者享有同等的权力。

2 永住权者在关于金融交易及秘密保障的有关法律，票据法和支票法的实施上和大韩民国国民享有同等的权力和义务。

第18条(医疗保险，国民年金)

1 永住权者可以根据国民健康保险法加入医疗保险。

2 永住权者可以根据国民年金法加入国民年金。

第19条(教育)

永住权者入学国内各级学校时和大韩民国国民享有同等的权力和义务。

第20条(纳税的义务)

永住权者准于大韩民国国民具有纳税的义务。

附则

第1条(施行日)

本法案自公布之日起过3个月之后开始施行。

第2条(经过措施)

关于永住权者在1998年6月25日之前根据名义信托约定以名义受托者的名义登记的不动产，将不受约关于不动产实权利者名义登记的法律第十一条第一项及第二项的规定，并在此法案施行一年之内进行实名登记。

토론회 관련 보도자료

장기거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준다

민주당은 5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지자체 선거권을 주기 위해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 부여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4일 "3대 개혁법안중 하나인 인권법 제정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에 관한 특별법을 회기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은 재일동포의 숙원으로 현재 일본 국회에 계류중인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행정자치위 박봉국(朴奉國) 수석전문위원은 "3당 간사간 협의는 안됐지만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려고 준비중"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간 쟁점이 될 만한 법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외국인은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없으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금처럼 제외된다. 이 법안은 공포된지 1년 뒤 효력을 발휘하게 돼 이번 회기내 처리될 경우 내년 상반기 지자체 선거에서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월 현재 국내 거주 자격취득 외국인은 2만2894명이며, 이 법의 대상인 20세 이상, 5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1만6217명(국내 총유권자의 0.05%)이다. /황정미-김명준기자 bird@sgt.co.kr

기사입력 시간 : 02/05 07:53



월간 이리링



서울 차이나타운 양필승 개발추진위원장 일본에 있는 화교연구회에서 초청 강연

양 필승 서울 차이나타운 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전국대 교수)이 일본의 '제한 화교 연구회'에서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한국화교의 현황'에 대한 강연을 했다. 1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강연회

에서 양 위원장은 "재일 동포의 참정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재일 동포 지위보다 훨씬 못한 한국화교의 지위를 그대로 놔두고서 재일 동포 법적 지위를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한국화교의 법적지위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 화교의 법적 지위는 장기거주외국인의 신분 처지이다. 이러한 상황은 재일 동포 법적 지위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으로서 오늘날 화교사회가 한국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고,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된 현실을 낳았다. 강연회에서 양 위원장은 한국화교의 법적 지위와 그간 화교들과 사회를 지

켜 보아온 경험담,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 차이나타운의 건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차이나타운의 조성이 화교 자본 유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화교에 대한 치우 개선은 한국인의 세계화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 있는 제한화교연구회는 지난해 2월 강제연(하나조노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간사이 지역 재일 한국인 연구자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국에서의 화교차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족했으며, 현재 제한 화교의 영주권 관련 입법 청원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朝鮮日報

改善旅韓華僑法律地位

「港韓F-2資格外國人承認權研討會」盛況空前

(本報訊)韓國華僑人士對於華僑已是好幾代居住在此的華僑唯一少數民族。在華僑界上，生活上獨立自主，無不守法，非常成功。如：在日僑胞的情況來看，如今已達到要求獲得日本地方政府參政權的水準。而長期居留在此的外國人(附F-2)一類的，普遍佔百分之九十以上。但未能給予保障人權的法律地位，因此，應予引進「本國程度」，俾使改善其居留外國人的法律地位。

韓國「民主社會聯盟」聯合「漢城中國學中心」及「漢城華僑協會」等，「新社會共同運動聯合」，「參政連帶」及「漢城中韓開發推進委員會」等單位，邀請日本花園大學教授高榮、民主黨黨首黃大、世界YWCA副會長朴振、漢城華僑協會會長劉國興及成均館大學教授李品南等有關單位人士於三月二十

八日下午二時，在國會議員會館小會議室，舉行「港韓F-2資格外國人承認權研討會」特別立法討論會。

是日，我旅韓各地華僑前往聽者約有二百五十人，將只能容納一百五十人的會場，擠得水泄不通。顯見華僑對此事的關心。

漢城中國學中心代表蔡公承教授在會中提出：在韓國邁向世界的此一時代，而與代處國際留學生在韓的三萬餘華僑仍五年辦理一次延期居留，且法律地位未能充分的獲得保障，形成一種「移民現象」，至五年延「參政連帶」，「參政連帶」等市民團體於七月四日在新聞中心前辦「世界化及人權」提高華僑法律地位」的學術研討會，才將華僑地位問題浮現於社會中，引起廣泛的重視。去年底乃由各主要華僑界立法提案，透過大國黨黨首黃大，及執政黨黨首黃大，以議員立法



展開新移民或移民中韓的中政策，在漢城華僑和多位韓國人士，也正努力於中國政策的建立，以加大中、大國關係。許多多位韓國政治家們為提高華僑的地位在各方面不遺餘力。今天的機會正是這種努力的結果，可處在華僑地位而興建的中韓城或為提高華僑地位而賦予的參政權等政策雖然可貴，但，提高基本人權的水準應是比任何都重要。

劉國興副會長表示：韓國華僑至今尚被視為永遠的「免費的勞力」，就在數年前，我們還不能擁有土地所有權，而包括教育費一切稅務，都仍按期繳納，我們華僑學費在幾年前還處於「任意開辦」。這代表著華僑子女的學費不能韓國認定，從各方面來看，我們處於韓國法律保障範圍以外，然而，我們並沒有什麼法外特權，我們是韓國社會所遺忘，不被承認的一群。

劉國興會長最後呼籲華僑：如今，水漲船高的時

法的形式，應促進在四月國會中通過，賦予長期居留外國人承認權資格。

蔡公承指出：我們之所以推動該項活動並非為了施惠外國人，而是為了我們自己的國家，韓國社會的「內面世界化」及「內面世界化」。

執政黨黨首黃大在發言中說明立法草案的各項內容外，他並指出：目前國會中已提出「長期居留外國人在地方自治團體選舉權」的立法案，目前尚在審議中，但根本上，應賦予長期居留外國人的永久居留權，以改善他們的法律地位，使其在國內能有安定的生活。

與在漢城華僑協會會長劉國興在會中說明演說中指出：我們韓國華僑在這片土地上，已經居住了好幾代，在日韓時代與日獨立鬥士們為反抗殖民統治而鬥爭中，韓國華僑的奉獻精神和與韓國共同並肩作戰的經過，但是，在韓國社會中，華僑對華僑和長期居留外國人平等待遇，因此，許多華僑向上移民之路，但他們在韓國卻還唱著悲慘的歌曲，吃著韓國地產，住著韓國地產片土地。

劉國興表示：近來，韓國社會正在急劇的與世界國際化，韓國社會的觀念與以前大不相同，其中最明顯的將在韓國城市中，活絡的

人，將使我們的華僑在韓國社會中的基本人權得以保障，從此我們不再是最底層的一份子，為韓國社會的發展而努力，為韓國的世界化，在各自的崗位上扮演好角色。

黃大與會人士均對華僑目前處境及爭取權益，表示有所充分了解，其中尤以世界YWCA副會長朴振廣所發言最為熱烈，現任漢城華僑協會會長劉國興以研究華僑問題而獲得博士學位，為韓國運動的領導人士，並同劉國興為一「僑胞分子」，未能如其所望的奉獻其所任職，而劉國興在會中，他對華僑地位問題，以及七〇年代韓國政府迫華僑(不准中國領事館買米飯，重稅)等均有詳盡的瞭解，最後他更呼籲心疾首的呼籲韓國政府，應賦予華僑永久居留權，提高華僑的法律地位，以應三萬餘華僑能在此地安居樂業。

討論會於下午四時許結束，原定是有與參政連帶討論的時程，但因時間關係而取消，使華僑頗感失望。

朝鮮日報

2001年 3월 31일 토요일 42판

5년이상 체류 외국인 영주권 부여 움직임 2萬 화교 모처럼 '활짝'

국내외국인 95%가 화교

“영주권 취득은 이방인처럼 외면 당해온 2만2000여명의 화교(華僑)가 대한민국 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입니다.”

30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한성화교중고등학교의 점심시간. 교복차림의 학생들이 운동장과 교실 곳곳에 모여앉아 영주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영주권이 주어진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을까?”,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인터넷 한글도메인의 이메일부터 받아야겠네”, “한국학교로 전학 갈 수도 있겠네”, “휴대전화 살 때도 보증금 안 내도 되는 거야”. 영주권 제도 소식을 들은 학생들의 궁금증은 끝이 없었다.

이 학교 사오상량(蕭相讓·57) 교무주임은 “그동안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나쁜 생각을 갖게 될까봐 영주권에 대한 교육을 일부터 시키지 않았는데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평생 살아갈 애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이방인 취급 설움

5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이 일부 의원들에 의해 추진된다는 보도(본지 29일자 2면 참조)가 나간 이후 한국에 정착한 화교 사회는 기대감에 들떠 있다.

이 법이 제정돼 외국인에게 영주



◇설레는 화교학생들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한성화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나서고 있다. 국내 거주 화교들은, 5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 추진 소식에 크게 고무돼 있다. /김종기기자 cjkim@chosun.com

권을 부여할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95% 가량이 화교들이다. 화교는 전세계 100여개국 이상에 3000여만명이 퍼져 살면서 대부분 귀화하지 않고 그 나라 영주권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한국은 화교에게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는 거의 마지막 나라”라는 게 화교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화교들은 5년마다 한번씩 법무부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했다. 불편도 불편이지만 언제든 한국사회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컸다.

한성화교협회 유국홍(劉國興) 회장은 “일제 때 함께 독립투쟁을 하고, 6·25전쟁 때는 총을 들었던 우리

가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때 10만명이 넘는 화교들 중 70% 이상이 한국을 등지고 미국 등으로 2차 이민을 갔다”고 말했다.

“法제정 빨리 이뤄지길”

그래서 화교들은 “이번 법 제정 추진은 한국에서의 화교의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환영하고 있다. 화교 3세인 부자오치(卜昭麒·48) 대만대법부 대리총영사는 “이제 화교들은 김치 없이는 못 살 만큼 한국 사회에 동화돼 있다”며 “논의로만 그치지 않고 하루빨리 법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羅志弘기자 willy@chosun.com

MBC 뉴스보도: 여야의원 영주권제도 추진



민주당의 정대철, 한나라당의 이부영의원은 화교를 비롯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성년이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이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국어구사능력을 갖추는 등 일정한 기준에 맞을 경우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28일 저녁뉴스, 마감뉴스
2001년 3월 29일 아침뉴스

THE KOREA TIMES

Established 1950, No. 15669

www.koreatimes.co.kr

Seoul, Wednesday, March 28, 2001

Bill Calls for Granting Permanent Residency to Long-Term Foreigners

By Kim Kwang-tae
Staff Reporter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y may be granted to foreigners in Korea soon for the first time as a move by lawmakers toward this end gained momentum.

Ruling and opposition lawmakers yesterday launched a signature collection campaign to render their support for the envisioned bill.

Rep. Chyung Dai-chul of the ruling Millennium Democratic Party (MDP) said they plan to give an Assembly blessing to the bill at the next extra Assembly session due in April.

The proposed bill, if put into effect, will enable foreigners who live here for more than five years to establish their legal status on a permanent basis.

At the end of February,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totaled 500,500, of which 305,100 are legally registered residents while 195,400 are illegal aliens. Illegal aliens will not be entitled to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y.

The main beneficiaries of the bill will be ethnic Chinese, better known as "hwagyo" in Korean. Hwagyo account for as many as 95 percent of long-term foreign residents in Korea, which is estimated at around 23,000.

The origin of hwagyo dates back

to 1882 when China's Ching Dynasty dispatched troops under the command of Gen. Yuan Shikai following a Korean military uprising in Seoul. Along with the troops, merchants came to Korea, creating what later became a Chinese community.

The bill will also serve as a clear testimony to Korea's move to embrace foreigners and enhance their human rights.

"The bill is highly significant in that foreigners will have legal status and become members of our society," said Yang Phil-seung, director of Seoul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der the current law, hwagyo have had to renew their visas every five years in order to live in Korea.

"As things stand now, Korea's effort to embrace globalization is going nowhere," warned Yang. "The government demands that ethnic Koreans be awarded the right to vote in Japan, while it denies foreigners living in Korea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y. In a sense, it demonstrates a dilemma on the par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p. Lee Bu-young of the main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GNP) also weighed in, saying, "We have no right to blame Japan for its failure to grant ethnic Koreans suffrage in municipal elections while we do not embrace long-term

foreign residents with open hearts."

A close aide to Rep. Chyung said that the bill is about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Some say that ethnic Koreans living abroad are subject to discrimination but the government is double-faced regarding visa renewals for foreigners," the official said.

"The bill granting foreigners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y is a clear reminder that Korea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improve human rights in an era of globalization," said the official.

In a related development, a public hearing on the envisioned bill is to be held today at the conference room of the National Assembly, in which members of civic movements, including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r Minbyun, and Chinese Resident's Association are expected to call for the bill's passage.

In additio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considering enfranchising foreigners who live here more than five years in local elections.

The bill is pending at a parliamentary ad hoc committee on political reform. An official expected that the bill will receive parliamentary endorsement soon, saying, "There is no big discrepancy, if any,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the bill."

ktkim@koreatimes.co.kr

관 련 보 도 자 료

장기거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준다

민주당은 5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지자체 선거권을 주기 위해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 부여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4일 "3대 개혁법안중 하나인 인권법 제정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에 관한 특별법을 회기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은 재일동포의 숙원으로 현재 일본 국회에 계류중인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행정자치위 박봉국(朴奉國) 수석전문위원은 "3당 간사간 협의는 안됐지만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려고 준비중"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간 쟁점이 될 만한 법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외국인은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없으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금처럼 제외된다. 이 법안은 공포된지 1년 뒤 효력을 발휘하게 돼 이번 회기내 처리될 경우 내년 상반기 지자체 선거에서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월 현재 국내 거주 자격취득 외국인은 2만2894명이며, 이 법의 대상인 20세 이상, 5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1만6217명(국내 총유권자의 0.05%)이다. /황정미-김명준기자 bird@sgt.co.kr

기사입력 시간 : 02/05 07:53



서울 차이나타운 양필승 개발추진위원장 일본에 있는 화교연구회에서 초청 강연



양 필승 서울 차이나타운 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건국대 교수)이 일본의 '재한 화교연구회'에서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한국화교의 현황'에 대한 강연을 했다. 1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강연회

에서 양 위원장은 "재일 동포의 참정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재일 동포 지위보다 훨씬 못한 한국화교의 지위를 그대로 놔두고서 재일 동포 법적 지위를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한국화교의 법적지위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 화교의 법적 지위는 장기거주외국인의 신분으로서 5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러한 상황은 재일 동포 법적 지위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으로서 오늘날 화교사회가 한국에서 사라질 위기이고,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된 현실을 낳았다.

강연회에서 양 위원장은 한국화교의 법적 지위와, 그간 화교들과 사회를 지

켜 보아온 경험담,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 차이나타운의 건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차이나타운의 조성이 화교 자본 유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화교에 대한 처우 개선은 한국인의 세계화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 있는 재한화교연구회는 지난해 2월 강재언(하나조노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간사이 지역 재일 한국인 연구자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국에서의 화교차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족했으며, 현재 재한 화교의 영주권 관련 입법 청원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Chinatown finally to flourish in Korea

Clara Li

The word "Chinatown" conjures up images of early immigrants eking out an existence amid crowded streets buzzing with stalls and steaming noodle stands. However the Chinatown envisioned by Professor Philip Yang of Konkook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 is somewhat different.

"It will be a modern and clean city - a city for the millennium," explains Professor Yang, who is co-chairman of the Seoul Chinatown development Committee. Professor Yang - in Hong Kong on an information and fund-raising tour - believes South Korea is probably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ith no Chinatown. This is surprising given the two countries' proximity and centuries of Chinese influence on Korean culture.

There used to be a sizeable Chinese community in Korea - 150,000 at one time - but this has dwindled to only 22,000. Although the Chinese have long enjoyed business success across Asia, years of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have rendered them a struggling minority.

Many are still regarded as foreigners, even after living there for generations, and need to renew their visas every five years. Chinese make up 97 per cent of the countries' legitimate long-term foreign residents, according to figures from the Korean Justice Ministry.

This, along with a variety of legal restrictions, has created barriers to business for Chinese people in South Korea. But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left the Government scrambling to attract foreign capital.

A Korean Chinatown would seem to be the perfect vehicle for attracting tourist dollars. It is estimated that half a million mainland Chinese visited South Korea last year and a million are expected this year.

Dr Yang says one of the questions most tourists ask is: "Where is the China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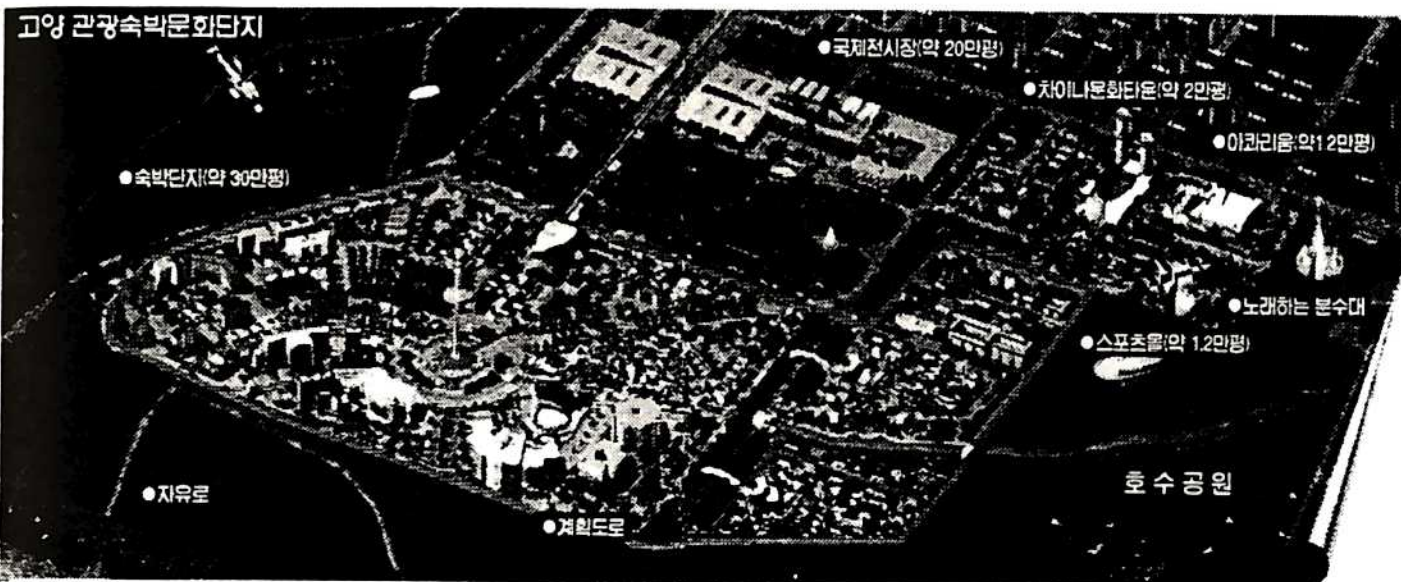
He admits the project is a commercial development, but believes it will house more than 50,000 Chinese. "The Chinese contents of the stores and facilities will attract them, especially newcomers."

The proposed complex - costing US\$741 million (HK\$5.7 billion), excluding land price - promises shopping malls, hotels, residential apartments, office buildings and, naturally, Chinese restaurants.

"What is Chinatown?" Professor Yang asks. "It is a place for people to meet, eat and do business."

The location of the new town, is being weighed between Seoul and Ilsan - a suburban city 10 minutes' drive from Seoul. Ilsan is expected to win.

Li Chung-shiann, a Korean-Chinese businessman and a leading member of Chinatown committee says that the project has received a positive response from both local and overseas Chinese. Construction is due to start in October and the first phase is due to open by February, 2003.



한국형 라스베가스 꿈꾼다

고양 관광숙박문화단지 추진 배경과 전망

2010년 외래관광객 1천만명 동북아 관광교류 거점 구축

는 단지 조성에 총 1조 1천31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반시설은 정부와 도가 조성하고 호텔 등 주요시설은 민자 또는 외자를 끌어들이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양시 어떻게 바뀌나

종합전시장·아라리움 등 설치 국제적 컨벤션 도시로 발돋움

'세계속의 관광한국' 꿈을 키우는 경기도의 노력으로 고양시가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거대한 관광도시로 탈바꿈한다. 라스베가스는 단순한 도박도시가 아니다. 가족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 나면서 국제적인 컨벤션도시로 지구촌 가족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우선 잠정동 일원 99만㎡가 국제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칭 '관광숙박문화단지'로 지정돼 이 곳에는 오는 2010년까지 8천실 규모의 중저가 관광호텔 및 한국전통호텔 등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과 상업, 오락, 휴양, 문화 등 각종 지원시설을 갖춘 '문화와 관광이 집결된

경기도는 내년까지 세부계획수립 및 설계를 마치고 2002년 중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 2007년에 목표 객실의 30~50%를 공급하고 2010년 최종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파급효과는-정부는 이 단지 건설로 약 3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3조 8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숙박단지가 건설된 후에는 연간 3만5천명 이상의 고용 유발효과와 1조 2천여억원의 부가가치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이 단지 조성으로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관광교류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학계 및 관광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동훈기자 donghun@joongboo.com

숙박단지가 조성된다

또 관광숙박문화단지 인근에 산업지원부와 경기도가 함께 국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고양국제종합전시장(66만㎡)이 2013년 문을 연다. 여기에 국제종합전시장 바로 옆으로 차이나문화타운(6만6천㎡)이 조성되고, 아라리움(3만9천㎡), 스포츠홀(3만9천㎡), 노래하는 분수대 등 관광 관련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이 일대는 미국 라스베가스 못지않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특히 컨벤션 도시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비즈니스 센터를 위한 국제 수준의 고급 호텔(별 4개)이 국제종합전시장 배후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 일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상업, 휴양, 문화가 아우러진 거대한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한동훈기자 donghun@joongboo.com

김영-백인기자 suhy@joongboo.com

종목 : 대한매일

일자 : 2000년 9월 2일(토요일)

분류 : 지역(25면)

상암동에 '첨단 차이나타운'

디지털시티 3만평에 화교자본 유치 호텔·정보산업·벤처단지 조성키로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설 서울 상암동의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중국계 화교자본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첨단 차이나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차이나타운 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양필승 건국대교수)로부터 상암동 DMC조성부지 가운데 3만5,000평 가량을 할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추진위는 중국과 대만 화교자본을 유치, 이곳에 첨단 정보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대형 호텔과 부대시설 등이 포함된 신개념의 차이나타운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이상규 박사는 "오는 2006년까지 해외에서 약 1조원 가량의 화교자본을 유치, 상암동 차

이나타운 조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실리컨벨리인 중관촌(中關村) 기술단의 청화대학 기업집단 송진(宋軍) 총재 등 중국의 정보통신업계 대표들이 1일 서울시를 방문, 고건(高建) 시장과 DMC 관련 협력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서 송 총재는 지난 7월 추진위원회와 공동합작사업에 합의, 협의서를 교환했다고 밝혀 상암동 차이나타운 조성계획이 상당 부분 진행중임을 우회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로부터 제의를 받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중"이라며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양해각서 체결



결이나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내 17만1,000평을 오는 2010년까지 미래형 정보도시인 DMC로 개발하기로 하는 신도시계획을 밝혔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암동에 첨

단 차이나타운이 조성될 경우 내 벤처산업과 첨단 정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미국 독일 등 저까지 입주 의향을 밝힌 외국자를 유치, 국제적 주목을 받는 첨단 디지털미디어시티가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익기자 jeshim@kdaily.co

2000. 7. 6

(Yonhap Feature) Chinese -residency Ethnic Chinese See Slow But Sure Progress in Improvement of Rights
By Yoo Chang-yup

Seoul, July 6 (Yonhap) - Ethnic Chinese residents in Korea are seeing the wall of discrimination here slowly coming down but still face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The number of ethnic Chinese living in the country reached 22,000 in late 1998, of which 95 percent of them were from Shandong Bandao, China, according to the Justice Ministry. Chinese resident associations say the exact number has yet to be confirmed as most of them hold Taiwanese nationality.

Chinese began to settle in the nation between the 1880s and 1900s, experts here say. They were able to settle here successfully by maintaining mutually-beneficial relations with Koreans. In the 1910s and 20s, more and more Chinese fled to Korea to escape political trouble in China. Between the 1930 and 40s, they could secure a better status in economic terms in the process of the confused situation in Korea amid Japanese colonialism.

The number of Chinese immigrants to Korea stalled between the 1950s and 70s as the government banned Chinese from immigrating into the nation and strengthened its discriminatory policy against them. Between the 1970s and 90s, ethnic Chinese in Korea saw hope in the growing friendly sentiment towards China and a changed atmosphere in Korean society due to a shift in attitude.

"Nowadays, the long-time discriminatory policies against Chinese residents in Korean society have lessened considerably thanks to the government's efforts for globalization," one expert said in a seminar here Tuesday hosted by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articipants at the seminar titled "Globalization and Human Rights: Enhancement of the Legal Status Chinese Residents in Korea" said there remains much to be done in Korean society to enhance the rights of ethnic Chinese here. They called for an end to the system in which an ethnic Chinese must renew his or her visa every five years despite having permanent residency here. Experts say the term of their visas should be indefinitely extended under certain conditions as Germany does for foreigners.

"The indefinite extension of the visa term is the most feasible measure as the justice minister can revise the relevant domestic law," a lawyer said, adding this action is urgently needed to help Chinese residents to settle in the nation.

yct9423@yonhapnews.co.kr (END)

初の世界周航に挑んだポルトガル人の探検家マゼラン。海のかなたに新天地を求めた歴史の航海からおよそ五百年を経たいま、今度は「地球人」たちがチャンス求め世界を駆け出した。だが、同じフロンティア探しても、彼らの姿はかつてのマゼランとは大きく異なる。

民間で宇宙開発

▼マゼランの船団は一五一九年、スペインを出発した。スペイン国王が航海費用の四分の三を拠出する国家事業だった。フロンティア探しの事業を国家が主導した大航海時代。「現代のマゼラン」は国に頼らず自力で新天地を切り開く。「世界初の商用宇宙探査機を民間で打ち上げる」。米カリフォルニア州サンディエゴ近郊

2000年地球人は

▽45・最終回

の宇宙開発会社スペースデブ。ジェームズ・ベンソン会長(55)が計画を披露してくれた。「小型探査機をロケットに載せて月や火星に発射し、映像をインターネットで流す。全世界で億人くらいが見るだろうから、ネット広告収入を考えるだけでも楽しくなるよ」

知の羅針盤 多様性包む帆 個の力で海へ

「政府は『宇宙仕様』という名目で電池一本に何百もつぎ込む。自動車の部品の方がよほど信頼性が高い」



実物大の探査機の模型を示すスペースデブ社のベンソン会長(米カリフォルニア州)

中国人街を建設

▼一五二二年、フィリピン

セブ島に上陸したマゼランは酋長や住民をキリスト教に改宗させた。改宗に応じない村はことごとく焼き払ってしまった。世界各地で西洋の価値観を押しつけようとした大航海時代。多様性を認めない偏狭さは紛争や摩擦の原因となり、地球社会を不安定にする。二十一世紀に必要なのは多様性を包み込む、しなやかな発想だ。

「韓国は本格的なチャイナタウンがない唯一の主要国といっている。二〇〇二年の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までにソウル市内に建設を」。韓国の建國大文学科教授の梁必承氏(42)はこう断言している。

取材班は長谷部剛、刀塚館久雄、竹沢正英、滝山晋、太田泰彦、片山晋哉、滝川盛幹、朝田武蔵、山崎浩志、小竹洋之、和田滋、有賀野彦、大西康之、横田勇人、村山宏、影木進子、橋本隆祐、朴相五、石沢将門、川瀬憲司、田中周、矢後衛で構成した。

毎日経済新聞 2000. 7. 5

国内 거주 화교 영주권제 도입을

민변 토론회서 주장

최은수 기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영주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민변(회장 송두환)과 한성화교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화교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화교들의 한국 내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F-2비자를 소유하고 있어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영도 변호사, 한기종 상지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등은 "이 같은 차별적 대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영주권 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영주권제도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미국식 영주권제도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일본식은 특혜·외교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현행 F-2비자를 조건부로 무기한 연기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기한 체류를 보장하는 독일식 영주권제 도입을 뜻하는 것으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일차적으로 화교들에게 무기한형 체류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다.

朝鮮日報

1999년 9월 16일 목요일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

웬만한 나라, 웬만한 대도시에는 ‘차이나 타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없다. 우리나라에도 전에는 있었다. 인천 선린동과 서울 소공동에 있던 차이나 타운은 중·노년층에게는 추억의 명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화교(華僑)에 대한 각종 규제와 우리 민족의 배타적 차별 때문에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60년대 이후 차이나 타운도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됐다. 해방직후에는 10만여명에 이르렀던 국내 거주 화교 수가 지금은 2만1000여명으로 50여년 사이 5분의 1로 감소했다. 중국에는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우리 동포(同胞) 200여만명이 살고 있다. 길림성에는 ‘조선족 자치주’도 있다. 이곳에서 우리 동포들은 우리 말을 사용하고 고유의 풍습을 지키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도 있다. 우리의 경우와 대비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와 국내거주 화교의 경우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화교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차별정책, 그리고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편협성 때문에 이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모른 체 해선 안 되겠다. 그것은 지구촌 시대

에 사는 우리로서 취할 바가 아니며,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들어 정부가 화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서울 연희동에 차이나 타운이 자생적으로 형성될 조짐과 함께, 인천 송도 신도시와 서울 뚝섬 등지에 ‘21세기형 차이나 타운’ 건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런 절호의 다행한 일이다. 해외의 화교자본을 국내 화교들이 유치해 차이나 타운을 건설하는 등 각종 사업을 벌이게 되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화교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더 많이 폐지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이들의 정규 학교 설립도 가능토록 해주어야 한다.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에서 세금을 물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과도 보이는 규제와 보이지 않는 규제가 곳곳에서 상존하고 있다. 당국은 화교학교에 대해 ‘각종 학교’로 인가받을 수 있게 완화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정규 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으면 한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 인종차별을 받은 한 자격이 없다.

백성들을 한반도로 이주시킨 계 계기였다. 이들은 서울 인천 부 산 원산 등지에 ‘화상조계(華商租界)’를 형성, 한국에 동지를 불렀다. 화교인구는 해방직후 중국 내전을 피해 산둥지역에서 대거 피란오면서 한때 10만명을 넘기도 했고 인천 선린동, 서울 소공동 등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됐다. 그러나 6·25전쟁과 두 차례 화폐개혁을 거치며 화교 수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67년 외국인 토지소유권 제한 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화교들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주하면서 차이나타운까지 모습을 감추버렸다.

곳곳 보이지 않는 황포

화교가 적인가 **한중(韓中) 수교후** 화교에 대한 법적 제도의 불이은 상당히 줄었다. 우선 지난해 7월 외국인 토지소유제한이 해제돼 화교들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올 2월에는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채취대상이 17세에서 2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거주지 등록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이들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준다는 방침도 마련됐고 서울시에서는 독심지역에 차이나타운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정

화교의 역사 1880년대 일 본이 한반도를 공략하고 나서자 인접국으로서 위기감을 느낀 청나라가 한반도에 대한 연고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 차별

일본에서 한민족에 대한 차별에 항의하며 인질극을 벌였던 권 회로(權禮老·71)씨의 귀국행보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외국인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가’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전체 외국인의 97%

100년 넘게 한국 땅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차별대우 속에 밀려 이 살아가는 화교(華僑)들. 그들 이야말로 ‘권회로’처럼 민족차별을 느끼고 있다. 8월31일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국내거주 외국인은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 20만9000명을 포함해 179개국, 36만8184명. 장기체류자 15만9184명 중 거주자격자(장기거주지)는 2만2642명(141개국)이며 이 가운데 화교는 2만1983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한다. 거주자격자는 장기체류여부 사회적응력 등 여러항목에 걸쳐 법무부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화교의 역사 1880년대 일 본이 한반도를 공략하고 나서자 인접국으로서 위기감을 느낀 청나라가 한반도에 대한 연고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華僑를 핍박하지 않는가”

외국인 국내 체류인원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장기체류자	70,187	101,206	138,778	171,255	148,900	159,184
단기체류자	119,727	127,293	182,026	201,686	142,800	209,000
총등록자	189,914	228,499	320,804	372,941	291,700	368,184
출신국가	180개국	176개국	183개국	175개국	179개국	179개국

장기체류자 거주자격자(장기거주지) 인명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대만출신 화교	22,301	22,222	22,182	22,160	22,018	21,983
일본출신거주지	225	238	256	305	400	466
기타	89	80	98	142	182	193
총계	22,615	22,540	22,535	22,607	22,600	22,642

(단위: 명, 매년 8월 31일 기준, 자료제공: 법무부)

도가 됐다. 의견상으로는 문제가 없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인은 여전히 이들에게 냉소적이다. 한국인들이 이들에 대해 갖는 ‘이유없는 우울감’은 우리 스스로도 참 헤아리기 어려운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이지 않는 차별’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화교들은 “대출 때는 가장 비싼 금리들, 이동전화 개설 때는 추가보증금을 물리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지역 화교협회의 한 직원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취직하더라도 승진은 꿈도 못꿨다”고 말했다.

“참정권 주면 뭐하냐”

한씨는 93년 아들 입표(入標·45)씨를 한국에 귀화시켰다. 주위의 시선 때문만이 아니었다. 외국인은 임대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형 비어 있는 시무실에 대한 재산세와 각종 세금 등을 내러나 재산세와 파탄직전에 이르렀던 것. 그러나 귀화도 쉽지 않았다. 4급 이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보종인 2명이 필요했기 때문. 한씨는 70년대와 90년대 초 두차례 신문 및 잡지사업

핍박의 생황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 의원을 운영하는 화교 한성호(韓

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외국인에게 허용돼 있지 않아 한국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고 이 한국인 때문에 재산 을 고스란히 날리고 말았다. 한씨는 손자들마저 학교에서 ‘중국 X’이란 소리를 들을 뻔 가슴 아프다고 한다. 한씨는 “참정권을 주면 뭐하냐”며 “그보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대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이나타운 설립 필요

화교의 숙원. 한씨처럼 화교들 대부분은 ‘이웃’으로 대접 받는 것. 서울 마포구에서 중국 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는 “사람들이 우리를 ‘장계’라고 부를 때 는 것에 이골이 났다”며 “왜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가”고 반문했다. 건국대 사학과 양필승(梁必承) 교수는 “중국과 동남아경제가 급속도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화교의 경제력을 잘 활용하면 국내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1세기형 차이나타운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한 국가의 위상을 아시아의 한 구성으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이원배기자> corekim@donga.com

朝鮮日報

단기 4332년 음력 7월 25일 1999년 9월 4일 토요일

亞洲週刊
YAZHOU ZHOUKAN

AUGUST 9 - AUGUST 15, 1999

“華僑는 국내 소수민족 권리 좀 찾아줍시다”

차이나타운 건설 주장
건국대 梁必承교수



“화교는 우리나라 안의 유일한 소수민족입니다. 그들을 박대하면서 우리 해외동포의 인권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건국대 양필승(梁必承·42·사학과·사진) 교수는 ‘차이나타운’ 건설 주장자이다. 그는 해외 화교자본 유치에 대해 지난 3월 설립된 ‘차이나타운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그는 오는 10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는 ‘세계 화상(華商)대회’에서 한국 차이나타운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주제 발표를 할 계획이다.

지금껏 法的으로 차별

국내에 차이나타운이 건설되고, 화교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우리나라가 비로소 국제화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양 교수가 화교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무렵이었다.

“어느날 나이 많은 화교 한 분이 연구실에 찾아와 ‘한국의 화교는 다 망했다’며 저더러 차이나타운 건설에 힘을 보태달라고 하시더군요. 우리가 화교를 ‘인간’과 ‘국민’으로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교들은 지금까지 자기 집을 가질 수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 외국인으로 5년마다 비자갱신을 해야 했다. 화교는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60년대 20만명에 달했던 화교는 최근 1만7000여명으로 줄었다.

양 교수는 화교자본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세계 화교자본의 양대 축인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테이핑 추안 회장과 홍콩상공회의소 참여우칭(陳有慶·67) 회장을 만났다.

양 교수는 서울시에 차이나타운 부지 선정을 제안해 좋은 상태다. 독성지역 8만여평이 예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타운 생기면 外資도 유치

양 교수는 “주거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차이나타운과 달리 금융과 부동산, 유통, 첨단 정보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21세기형 차이나타운’ 제안에 해외 화교자본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화교와 화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화교의 재산권과 참정권에 대한 제한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며 “화교와 한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張一鉉기자 injang@chosun.com
/사진=蔡承雨기자 rainman@chosun.com

南韓華人 迎接新希望

漢城、仁川和釜山等地方政府爲了吸引中國遊客、紛紛決定重建式微的中國街、曾飽受當局歧視和限制的華人歡迎這一決定，希望重振昔日雄風。

南韓的華人最近有一種南渡天吉甚至苦盡甘來的喜心情。京京漢城、仁川和釜山等大城市的地方政府爲了吸引中國遊客、紛紛決定在日漸式微的韓華村興建新穎的中國街。韓華也都有望重新振作。韓華來到朝鮮半島已有一百多年的歷史，人數最多時曾超過十萬。一九三一年，日本軍國主義者在中國東北的萬寶山故意挑釁，驅趕中國人和朝鮮農民，也引發朝鮮境內大規模衝突，導致瘋狂的排華風潮，非但各種韓華店舖被焚燒擄掠，死傷韓華也多達七百多人。萬寶山



韓國地鐵車廂：在互惠的軌道上，開向文化整合的驛站

事件後，韓華非但沒有被當局驅逐出境，反而在九八年開始，韓華人在韓島的投資人數直線上升，一度增加至六萬多人。南韓政府於一九八八年正式成立，韓

統計，當時南韓的貿易總額，韓華佔百分之十以上。不過，韓華的經濟實力在五十年代的韓戰以後急速衰退，尤其是六十年代的兩次貨幣改革，韓華幾乎遭到徹底的剝奪。南韓政府當時禁止外國人購買土地，令無數韓華吃了大虧。韓華爲了取得居住權或者建工廠，不得不借用韓華友人之名義登記，不少南韓人見利忘義，存心抵賴，把韓華的土地據爲己有。這類案例比比皆是。

一九八七年，南韓政府重新頒布外國人土地法，允許韓華擁有土地，不過，購買面積限制在二百坪以內（約六百六十平方呎）。這必須事先經內政部的特別審批，想取得土地絕其不易。

除了土地問題以外，在八十年代以前，南韓政府爲防止外匯流出，訂立了外匯管理法，限制外國人使用外匯；外國企業投資，南韓資本必須佔百分之五十一以上方能登記營業。這一招令韓華經營的工廠和企業又必須借用南韓友人的名義登記。

這批韓華到美加以後，仍然忘不了過去居住過的地方。在各地組織韓華團體，除了每年聚會，還經常回南韓訪問。與南各地的韓華協會維持聯繫，從未中斷過關係。這即是水不忘本的現象。

過去，素有一中國城一之稱的漢城小公館、仁川善鄰洞和釜山的草梁洞等地，都因爲中國人的離去，中國色彩急速淡化。只剩下寥寥幾家維持門面。年輕的南韓人根本不知道這些過去曾是中國人集中居住的地方。經常可以看到中國兒童在街頭巷尾踢毽子、玩遊戲。

根據南韓法務部統計，一九七二年，南韓全

中國炸醬麵是美好的童年回憶，伴隨韓國人長大

表登記，結果也是民事官司不斷，企業大多維持不了多久就關門。韓華經營的工廠和五金廠後來幾乎消失殆盡。

在如此惡劣的經營環境中，部分韓華紛紛離開南韓，前往台灣另謀生路。在台北的水和市場附近，甚至出現韓華村，經營南韓毛毯、香菸和特產品。也有許多韓華由東大街頭，深受台灣顧客的歡迎。然而因語言障礙和至倍民情差異，許多韓華到台灣的韓華，不久後再次收拾家當，遠去美國和加拿大。



漢城：華人經商，融入當地，「一日韓華，終生韓華」

境的韓華還有三萬五千人，其中包括不少「泡沐人口」：一些韓華為了日後方便留在南韓的親戚朋友見面，也為了給予子女留下一條後路，都盡量保留住僑居者身分。在離開南韓一年半後以後，必定返回南韓規定，韓華出國二年以上者，自幼喪失永久居留權。據此可以確切地估計出，在南韓留韓的實際人數不到二萬人。

目前，韓華的職業以餐飲業為主。雖然南韓職業以職稱聞名，但在四千多萬南韓人民中間，沒有一個不喜歡吃韓華為韓國人特製的炸

東的一個小村，果然找到了在幼時出盡洋頭的中國炸醬麵所用的醬料。一時頗為美談。

韓華極重視子女教育

韓華對子女的教育非常重視，南韓各地的韓華小學多達五百多所，漢城、釜山、大邱等大城市也都有切高中。

以前，高中以上的韓華學生大部分到台灣留學，進入可待大學進修的韓華學生日益增加。

山東籍是韓華主流派

在韓華中，九成五以上來自山東，少數來自其他省份，但也都由山東籍韓華同化。說者滿口的膠東話，韓華老家以牟平、榮成、文登和蓬萊縣為主，也有不少威海人。中國和南韓建交後，仁川和威海之間，則有定期班輪來往。租界威海的韓華可以一下船就回到老家，再不必為思鄉所苦。韓華對家鄉的感情非常濃厚，中國和南韓建交後，許多韓華經常回老家探親，更有許多人當地在當地投資辦學，希望為自己的老家作貢獻。

全大中華任總統以來，為了替在日本的六十多萬名韓華爭取法律地位，曾連公開宣佈允許韓華參政，以示以身作則。事實上，外國人購買土地的限制已經在企業投資等登記為非營利的財團法人，韓華的生存空間大為拓寬。同時，在全大中的開放政



釜山華僑中學：子弟學校遍布各地

策下，南韓政府已將把濟州島劃定為免簽證區，開放給中國遊客自由來往。釜山等大城市為了吸引中國人前往旅遊，也爭先恐後把幾近滅絕的中國村復興為韓華旅遊區，希望借助韓華的力量，開發成具有中國特色的旅遊街道，吸引中國遊客前來觀光。韓華的昔日日子似乎即將成為眼雲。